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3의2] <신설 2023. 1. 11.>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2조의2 관련)

## 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부대행기관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다.
- 나.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매출금액은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(90일을 말한다)별 또는 월별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한다.
- 다. 업무정지 일수는 별표 8에 따라 산정된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하며,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제7항에 따 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 1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
- 나)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# 2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 되는 경우
- 다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 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과징금 부과금액 = 연간 총매출금액 ÷ 365 × 업무정지 일수 ×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

#### 3.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부과기준율
가.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	법 제48조 제6항제4호	100분의 5
나. 법 제48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 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6항제5호	100분의 3